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2월 23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상복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일부 개정으로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부합하도록 개정함
(안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4년 2월 28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3
 - 전자메일 : aragu@korea.kr

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지원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)</p> <p>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오산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<u>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9조(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원하여야 한다.</u></p>